

# 2024년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평가 기준

## 1. 평가절차 : 서류 검토 → 서면평가 → 선정 및 결과 공지

- 서류검토 : 자격요건, 필수 서류 제출 여부, 제한요건 해당 여부 등
  - ※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신청 제한요소 해당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기반 항목별 평가
- 선정결과 : 선정기업 개별 통보
- 결과공지 : 한국관광산업포털(투어라즈) 사업소식 페이지 활용 결과 알림 및 향후 추진일정 게재

## 2. 절차별 평가방법

### ○ 서류검토

#### - 검토항목

- 신청 서비스와의 유사과제 수행 실적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이상 여부
- 사업신청서, 평가항목 증빙서류 등 서류 제출 여부
- 공사와의 과거 계약 불이행이나 불성실 여부 등

#### - 검토항목에 이상 없을 시 통과

- ※ 참가신청 서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0"점 처리 사유가 됨.
- ※ 서류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서비스 제공기업만 서면평가 진행

### ○ 서면평가

####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 전문성(참여인력의 자격 및 실무경력 부문) - 수행역량(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등)	75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 인력 규모 - 재무 안정성(매출액, 신용평가등급, 유동비율, 부채비율)	25점

#### - 종합 점수 70점 이상 시 적격

붙임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붙임**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배점	75점
평가관점	참여인력 경력, 기업 업력 및 수행 실적 등 평가		
지표정의	1. 참여인력의 관련분야 경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 기업이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서 적합한 인력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 2.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대한 확인을 통해 해당 기관이 서비스 제공기업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수행 경험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		
평가지표	<b>구분</b>	<b>평가지표</b>	<b>배점</b>
	①	참여인력의 경력평가(자격 및 실무경력 부문)	25점
	②	관련 분야 업력	10점
	③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20점
	④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20점

**① 참여인력의 경력평가(자격 및 실무경력 부문)**

- 본 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중 자격 및 실무경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단의 표를 참고로 평가

구 분	평점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25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20
전문자격 취득 및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해당 분야 경력 6년 이상	15
전문자격 취득 또는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10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5
해당 없음	0

- 경력의 인정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업 신청일자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에 한함.
- 경력 요약서에 기재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1)경력증명서 또는 (2)고용보험 득실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경력 인정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로 대체 가능
- 전문자격은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에 한함
- ※ 평점 부여기준 : 신청한 서비스 단위별로 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및 실무경력 부문의 평균 점수를 적용

## ② 관련분야 업력

- [평가산식] 관련 분야 업력 = 관련 분야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경과된 기간
  - 관련분야 업력은 관련업태 및 종목이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로부터 공고일(2024.3.11.)까지 경과한 기간을 계산하여 산정 (업력을 연 단위로 환산,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기타서류 첨부란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제출 시 인정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기타서류 첨부란에 (1)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모두 제출 시 인정

## ③ 유사과제 수행 실적 건수

- [평가산식]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의 합
  -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신청한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과제 수행 건수를 의미하며, 최근 3년 내(신청일 포함)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 건수의 합으로 산정

## ④ 유사과제 수행 실적 금액

- [평가산식]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의 합
  -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는 서비스 제공기업이 신청한 분야와 유사한 분야의 과제 수행 금액을 의미하며 최근 3년 내(신청일 포함) 시작 및 완료된 수행실적 금액의 합으로 산정
  - 유사과제 수행실적 인정 기준
    - (1)공고문에 제시된 “사업실적증명서” 양식에 맞게 제출되어야 확인 가능하며 양 계약 당사자의 직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또는 (2)나라장터 발급 사업실적증명서(반드시 QR코드 포함된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정부 대상 혹은 알리오 공시 공공기관” 과의 용역 수행실적에 한해, 지정양식의 “사업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계약처, 금액,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 시 인정 (단, 계약서 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 동일 필수)
    -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제출 가능한 기업 설립 이후의 실적건수 및 금액의 합으로 계산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별도양식 없음),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제출시 인정
    - 법인전환 외 단순 사업자명 변경 시 (1)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2)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을 증빙자료로 모두 제출 시 인정

구분	필수기재항목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날인
사업(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용역)명, 사업(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공동계약 시 비율 표시)
증명서 발급기관	기업(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관날인

※ 평점 부여기준 : 관련분야 업력,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

구분	득점 기준				
관련 분야 업력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점수	2	4	6	8	10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점수	4	8	12	16	20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 4천 미만	4천 이상 ~ 6천 미만	6천 이상~ 8천 미만	8천 이상 ~ 1억 미만	1억 이상
점수	4	8	12	16	20

평가항목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배점	25점
평가관점	인력규모 및 재무 안정성 평가			
지표의미	1. 인력규모에 대한 확인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인력규모를 지니고 있는지 평가 2. 매출액, 신용평가등급, 유동비율, 부채비율에 대한 확인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재무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지 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지표	배점
	인력 규모	①	인력 규모	5
		②	매출액	5
	재무 안정성	③	신용평가등급	5
		④	유동비율	5
		⑤	부채비율	5

### <인력 규모>

#### ① 인력 규모

○ [평가산식] 인력규모 = 서비스 제공기업의 상근인력 수

- 인력규모는 서비스 제공기업의 상근인력 수를 의미
- 인력규모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에 기재된 인력의 수로 산정하며, 신청일(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기재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 불가)
- 단,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신청월 기준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인정 (A01코드의 인원으로 평점 부여)

※ 평점 부여기준 : 인력규모를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함.

구분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점수	1	2	3	4	5

### <재무 안정성>

※ 제출자료 :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출 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제출(1년 또는 2년간 평균으로 산정)하며, 3년 이내 법인 전환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당 연도 재무제표증명원도 포함하여 제출 (단, 폐업사실증명원 및 포괄양수양도계약서 제출 필요)

※ 평가기준

평가시 반영 기준연도	증빙
최근 3년 기준 ('21~'23)	국세청 표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기업의 경우 발급 가능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시 인정
- 증빙미제출(누락) 연도의 경우, 해당연도 매출액은 '0' 으로 산정되며 유동비율, 부채비율의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여 최하점 부여
- 간편장부대상자 및 비영리법인 등 국세청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기업일 경우, 또는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등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은 가능하나 평가항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제출불가 사유에 대한 소명 공문, (2)회계사 확인 재무제표(원본대조필, 회계사 도장, 간인 모두 포함)와 함께 제출 시 인정

② [평가산식]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 최근 3년('21~'23년) 매출액 평균을 통해 산정하며, 매출액은 결산 공고된 국세청 홈택스 표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된 값에 한하여 인정

③ [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업자 발급 확인서 상의 등급 기준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에 기재된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의미하며, 신청일이 신용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에 한하여 인정함
-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업자인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에서 발급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한정
- 공공기관에 한해 기업신용평가등급 최고점수(5점) 부여

④ [평가산식] 유동비율 = 최근 3년간 평균 유동비율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은 최근 3년('21-'23년)의 유동자산 합계액을 유동부채 합계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⑤ [평가산식] 부채비율 = 최근 3년간 평균 부채비율

-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은 계산하며, 최근 3년('21-'23년)의 부채총계 합계액을 자기자본총계 합계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산출된 부채비율이 0보다 작을 시 최하점 부여

※ 평점 부여기준 : 매출액, 기업신용평가 등급, 유동비율, 부채비율을 측정하여 구간에 따라 평점을 부여

구분	특점 기준				
	매출액	4억 미만	4억 이상~ 6억 미만	6억 이상~ 8억 미만	8억 이상~ 10억 미만
점수	1	2	3	4	5
기업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	B-	B	BB-, B+	BB 이상
점수	1	2	3	4	5
유동비율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점수	1	2	3	4	5
부채비율	200% 이상	200% 미만 ~ 150% 이상	150% 미만 ~ 100%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점수	1	2	3	4	5

※ 관련증빙 미제출 시 또는 개인사업자의 관련자료 미보유 시 최하점 부여